

『2023년 민간주도형 예비창업지원 프로그램(시드팁스)』 창업기업 요건검토 안내

< 요건 항목 >

요건 항목
① 창업 사실 여부
↳ ①-1 (초기창업기업) 공고 기준 업력 3년 이내, 법인사업자 여부
↳ ①-2 (초기창업기업) 공동(각자)대표자의 총족 여부
↳ ①-3 (예비창업팀) 공고 기준 예비창업자, 과거 폐업 이력
↳ ①-4 (예비창업팀) 대표자 포함 2인 이내 구성 여부
② 투자 유치 이력
③ 사업계획 유사·중복성
④ 신용 정보 이력 (채무불이행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)
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혜 이력
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이력
⑦ 주관기관·운영사 (협업기관 포함)·평가위원회 소속 여부
⑧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여부
⑨ 공정거래위원회가 통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 여부

① 창업 사실 여부

○ 공통

- 최근 5년 동안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, 총 사업자등록내역 서류를 창업기업에게 수취하여 확인(홈택스 조회 가능)

< '휴폐업상태'에 따른 상세 확인 방법 >

① 휴·폐업자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폐업사실확인서', '사업자등록사실여부', '총사업자등록내역' 등
② 비영리법인/단체/국가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휴·폐업자와 동일한 증빙서류 및 '고유번호증' 등으로 해당 사업자등록의 '중소기업(창업)' 해당 여부 확인
<p>※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,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'창업기업'으로 판단하지 않음</p> <p>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거나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</p>

< '직위'에 따른 상세 확인 방법 >

① 대표, 대표자, 대표이사, 공동대표이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폐업사실확인서', '사업자등록사실여부', '총사업자등록내역' 등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p>※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→퇴임하였거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경우, '법인등기부등본' 등을 통해 퇴임(사임) 여부, 신청자 명의의 법인사업자등록 보유 여부 등 검토 * 초기창업기업의 경우, '공동(각자)대표' 대상으로 함께 검토 필요</p> </div>
② 대표이사 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총사업자등록내역' 검토에 따라 기타 필요 서류 추가 요청

○ 예비창업팀

▶ **통과 기준 : [유형] 예비창업자 * 기 폐업자 포함, [구성] 대표자 포함 2인 이내**

* **창업** :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

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'영리'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
* **사업공고일 이후,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사업자등록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 ([참고 2] '창업 여부 기준표' 참조)**

- 사업공고일 이후 폐업* 및 신청자(대표자) 명의의 사업자등록 보유 시, 폐업 후 이종·동종업종 창업** 기준 미준수 시, 요건 탈락

* **(이종업종 창업예정)** 사업공고일 이전에 폐업을 완료한 경우만 신청 자격에 부합
(동종업종 창업예정)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 후 3년, 부도·파산 후 2년 초과 필요

** **(법인사업자의 폐업)** 법인등기정보가 해산간주·청산종결간주 등인 경우, 사업자등록(사업자번호)이 최종 폐업되었을 때만 법인 폐업으로 간주

-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영리기업*의 사업자등록 보유 시, 창업을 아니므로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

* **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** 단,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거나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음

○ 초기창업기업

▶ **통과 기준 : [업력] 모집공고 차수별 업력 산정 기간 상이, [유형] 법인사업자**

* **법인사업자**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
* **다수사업자** :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소지한 경우, 동 사업 신청기업(법인)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 ([참고 2] '창업 여부 기준표' 참조)

- 사업공고일 기준, ①업력 3년* 이내 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상 초기 창업기업)의 ②법인사업자 등록 보유 여부를 확인

- 공동(각자)대표가 있는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'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- [참고 1] '창업 여부 기준표'를 참고하여 동 사업에 신청한 해당 법인사업자 등록이 '창업'에 해당*하는지 확인
 - * 업종·업태 또한 창업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

② 투자 유치 이력

- 창업기획자, VC(창투사, LLC 등) 등 투자사의 고유계정을 활용한 투자, 개인·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를 유치한 경우, 추천 불가 하며 개인의 엔젤직접투자는 허용
- '예비창업팀'의 경우에도 사업공고일 이후,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여 투자를 유치*하였을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확인 필요
 - * 예비창업자 상태에서 투자 유치를 구두 확약하고, 법인 설립 후 확약(계약)한 경우 등

③ 신용 정보 이력
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지, 채무불이행 여부 확인
 - * 국세는 홈택스,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 세금신고 납부현황 확인 가능

④ 주관기관·운영사(협업기관 포함)·평가위원회 소속 여부

- 해당 명단과 대조하여 직접 확인 필요

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
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(www.moel.go.kr) - 정보공개 -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서 신청자 '성명'을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* 확인
 - * 신청자와 임금 체불사업주 대상자 간의 성명, 생년월일, 사업장명 일치 여부를 확인

하되 임금체불 사업주 나이는 명단 공개 당시 기준이므로 현재와 차이가 날 수 있음

- 신청자와 임금 체불사업주의 나이 차이가 오차범위 (± 3) 이내에 해당하여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, 요건 탈락 처리

* 신청자의 과거 창업 사실과 이중 확인하여 사업장명 일치 여부 확인

** 나이 차이가 오차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동일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검토 요망

< 나이 차이(오차범위)에 따른 확인 기준 >

오차범위 외			오차범위 내 (동일인 가능성 有)			일치 (동일인 의심)	오차범위 내 (동일인 가능성 有)			오차범위 외		
-6	-5	-4	-3	-2	-1	0	1	2	3	4	5	6

⑥ **공정거래위원회가 통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 여부**

- 창업기업 요건 적합 여부 확인서 양식을 통한 자가 확인